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 마련 관련 내용 등 -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역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조약·협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입법예고가 발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사유

-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35호, 2023. 12. 31.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1. 보정이자 관련 규정 신설 (§46조의2 신설)

-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적용물품의 보정이자 관련 규정 신설

현행	개정
〈신설〉	<p>제46조의2 (보정이자)</p> <p>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p> <p>②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역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역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p> <p>3. 체역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p>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III.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
 -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 팩스 : 044-215-8079
- 문의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1)

| 첨부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붙임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Contact



차재영 관세사

T 02-6929-3464
E jycha@esein.co.kr



강은지 팀장

T 02-6011-3056
E ejka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